

전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나1065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김종오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석

변론 종결 2019. 10. 31.

판결 선고 2020. 1. 16.

제 1 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2314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E과 혼인하여 D(1990년생) 등을 자녀로 두었으나, 1994년경 이혼한 후원고 B이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이자 D의 외조부이고, 피고는 E의 동생이자 D의 숙부로 익산시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D이 대학교 중퇴 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는 2013. 7.경 원고 A의 자녀이자 원고 B의 동생인 F에게 "피고의 지인인 I 회사 임직원에게 5,000만 원 정도를 건네주면 D을 취직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 D의 친가와 외가에서 각 2,500만 원씩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F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원고 A은 2013. 7. 24. F를 통하여 피고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7. 25. 위와 같이 송금받은 2,500만 원 등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E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2.경 피고 누나의 아들인 H(D과 사촌 사이이다)에게 "D이 취업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마련해주면, 원고 B이 위 돈을 갚아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H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H가 2014. 8. 25.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2,0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하자, 원고 B은 2014. 8. 26.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D은 현재까지 취업이 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D의 취업청탁금 조로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반환 약정에 의한 금원 청구

먼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D이 취업이 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4,500만 원(원고 A 2,500만 원, 원고 B 2,000만 원, 이하 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4, 15호증(F,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F 내지 D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D이 취업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D의 취업을 구실로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은 H로부터 피고가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변제요청을 받았을 당시, 위 2,000만 원이 D의 취업청탁금으로 사용된 돈이어서 그 돈의 실질적인 채무자를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인 D으로 생각하고 위 2,000만 원을 H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F를 통하여 송금받은 2,500만원과 H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E의 요청에 따라 D의 취업청탁금 명목 등으로 E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출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의 취업 내지 이 사건 취업청탁금의 수수·사용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E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F 내지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D의 취업청탁금 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E의 개입 내지 주도하에 사용된다면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서 기망행위에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포함되는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표의자에게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 강화,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D의 취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들과는 그 신뢰관계가 파탄된 E이 위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금을 지출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 내지원고들에게 D의 취업 관련 업무에 관하여 E의 관여 없이 피고가 직접 이를 주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취업지원금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취업 주선 등 취업 관련 업무의 수행은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신뢰도, 업무능력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실질적 업무진행자와 구체적인 업무진행방법 등은 해당 업무의 위임 내지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을 E이 가져다가 취업청탁금 조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들로서는 E이 중간에서 이 사건 금원을 가져다가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받았다면, 결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② E은 원고 B과의 혼인기간 중에 외도와 보증채무 부담에 따른 재산상실 등의 사유로 원고 B과 이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과 E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후 20여 년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무렵 E이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자금부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에게 'D의 취업을 위하여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D의 취업 관련 업무 및 지원금의 지출은 D의 친부인 E이 진행한 것이며, 피고는 D의 취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④ 그럼에도 피고는 2013. 7.경 F에게 D의 취업지원금에 관한 제안을 할 당시에 "5,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주면 D을 취직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 D의 친가와 외가에 서 각 2,500만 원씩 마련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이 직접 D의 취업 관련 업무를 주도할 것처럼 말하였을 뿐, 실제로 자금을 지출하면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사람이 E이 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F가 피고에게 "E이 개입할 것이라면 말도 꺼내지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E이 관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 ⑤ 피고는 D의 친모인 원고 B 내지 외가식구들인 F, 원고 A으로부터 D의 취업청탁금 조로 2,500만 원을 받을 의사로 F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었고, F를 통하여 원고 A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인 2014. 7. 내지 8.경에는 원고 B에 게 'D이 취업하는 데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H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사용할테니 H에게 2,000원을 갚아라'고 하였고, 원고 B이 이를 승낙한 후 2014. 8. 26. H의 변제요청에 따라 H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⑥ 원고들과 F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경제적 능력 및 사회적 지위가 있는 피고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자, 피고를 신뢰하여 취업청탁금 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들과 F가 D의 취업 관련 업무를 피고가 아닌 E이 진행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는 F를 통하여 원고들 측에 'D의 친가와 외가에서 각 2,500만 원씩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3. 7. 24.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3.7. 25. 위 2,500만 원에 피고의 자금 7,5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원을 E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D의 숙부이기는 하나, 조카의 취업을 위하여 7,500만 원이라는 고액을 지원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7,500만 원은 F에 게 위 제안 당시 피고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2,500만 원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D의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되기 전부터 H와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D의 취업청탁금 조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경험칙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원이 I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면,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D이 취업되지 아니한 이상, 위 돈을 반환받았어야 마땅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에 게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김주완, 판사 김은경